

#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(개정일 : 2021.05.20.)

## 1. 정보교류차단 정보

-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주요정보
-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
- ③ 집합투자재산, 일임투자재산 등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- ④ 다만, 불특정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공개된 것은 예외로 함

## 2. 정보교류차단 제외 정보

### 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
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외 총액과 증권외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전송요구를 받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
-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“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”의 승인을 받은 정보

### ■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
- ① 부동산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② 생성일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
-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내부승인을 득한 정보
- ④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공개(IPO) 정보
- ⑤ KOSPI200, KOSDAQ150 종목

## 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당사의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종목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음

### ■ 미공개 중요정보

- ①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
- ②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
- ③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
- ④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
- ⑤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

- ⑥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
- ⑦ 경영·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
- ⑧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
- ⑨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·해임 결정
- ⑩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
- ⑪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
- ⑫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

■ 기타

- ① 회사가 운용중인 고유, 신탁재산 등에서 보유한 투자자산으로서 정보교류차단 제외 종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종목 일체
- ② 법률, 계약 또는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
■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

- ① 고유재산 운용 부문
- ② 집합투자재산(투자일임재산, 투자자문재산 포함) 운용 부문
- ③ 다만, 지정된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과 지정된 후선부서는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,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.

■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
- ①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 
: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자산에 관한 정보
- ② 집합투자재산(투자일임재산, 투자자문재산 포함) 운용업무  
: 집합투자재산(투자일임재산, 투자자문재산 포함)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
5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바,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.

■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

구분	이해상충 유형	자본시장법상 금지규정
집합/ 고유	펀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고유계정으로 먼저 매매하는 행위	선행매매금지(법

	(front running)	제85조 제1항)
부수·경영/ 고유	부수·경영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법인 및 그 상대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고유계정에서 먼저 매매하는 행위(front running)	선행매매금지(법 제85조 제1항)
집합/ 매매	펀드재산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(dumping)	자기·관계인 인수 증권 매수 금지(법 제85조제2항)
집합/ 매매	금융투자업자 보유증권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보유 증권을 금융투자업자가 매수(dumping)	자기거래 금지(법 제85조제5항)
집합/ 타사	펀드재산으로 펀드판매나 조사보고서 대가,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지불	soft-dollar 제공 금지(법 제85조제8항)

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

거래 유형	이해상충 관계	관리방안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	회사 / 고객 고객 / 고객	·준법감시인 사전확인 ·해당 거래 중단
임직원의 증권투자행위	임직원 / 고객	·사전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
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	회사 / 고객	·모니터링을 통한 법령위반 가능성 해소
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	회사 / 고객 고객 / 고객	·해당/후속 거래 중단 ·모니터링을 통한 법령위반 가능성 해소
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.	임직원 / 고객	·중개사 변경 또는 계약조건 수정 ·해당/후속 거래 중단
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.(다만, 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.)	임직원 / 고객	·준법감시인에 보고
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	회사 / 고객	·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준수
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	회사 / 임직원	·사전승인